

채용자격기준

직급	채 용 자 격 기 준
1급	1. 국제개발협력 유관분야 경력 20년 이상(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, 5년을 경력으로 합산) 2. 국가공무원 4급으로 6년 이상 경력소지자 3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급	1. 국제개발협력 유관분야 경력 15년 이상(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, 5년을 경력으로 합산) 2. 국가공무원 4급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급	1.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(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, 5년을 경력으로 합산) 2. 국가공무원 5급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4급	1.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(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, 5년을 경력으로 합산) 2. 국가공무원 6급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5급	1.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(석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을 경력으로 합산) 2. 국가공무원 7급으로 2년 이상 경력소지자 3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6급	1.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※ 소요경력 최저 년 수는 [별표 1의 3]의 경력환산적용비율로 산정한 연수로 한다.

경력환산기준표(채용기준 경력 계산용)

경력환산등급	A	채용할 직무와 동종의 직무경험을 가진 자			
	B	채용할 직무 외의 타 직무에 경험을 가진 자			
직 종 별 적 용 구 분	경력기간환산적용비율		100%	80%	50%
	국 가 공 무 원		A		B
	공 공 기 관		A		B
	국 제 기 구		A		B
	연 구 기 관			A	
	대 학 (원)			A	
	민 간 단 체			A	
	사 기 업 체			A	
	협 력 단 근 무 경 력		A		B
	국 별 ODA 전 문 가 경 력		A		B
비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을 평정함으로써 협력단의 경력으로 간주 환산하여 경력직 채용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. 2. 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력에 대하여는 해당직무, 기관의 규모나 성격, 근무내용 등에 따라 이 기준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함. 3.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산율이 높은 일방만을 인정함. 4. 경력 년 수 계산에 있어서 6개월 이내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함. 5. 협력단 근무경력에는 기간제근로자, 해외사무소 청년인턴, 봉사단 관리요원, 해외봉사단 경력을 포함함. 				

직원 연봉기준표

<기본연봉>

(단위:천원)

직급	상한액	하한액
1급	<u>76,302</u>	<u>52,263</u>
2급	<u>73,045</u>	<u>46,503</u>
3급	<u>68,492</u>	<u>43,425</u>
4급	<u>63,025</u>	<u>37,690</u>
5급	<u>58,536</u>	<u>27,866</u>
기능직	<u>52,612</u>	<u>27,462</u>

<성과연봉>

(단위:천원)

직급	상한액	하한액
1급	<삭제>	<삭제>
2급	<삭제>	<삭제>
3급	<u>12,249</u>	<u>7,389</u>
4급	<u>11,092</u>	<u>6,152</u>
5급	<u>9,936</u>	<u>4,545</u>
기능직	<u>8,814</u>	<u>4,383</u>

<무기계약직 성과연봉>

(단위:천원)

직급	상한액	하한액
3급대우	<u>12,249</u>	<u>7,389</u>
4급대우	<u>11,092</u>	<u>6,152</u>
5급대우	<u>9,936</u>	<u>4,545</u>
6급대우	<u>8,942</u>	<u>4,089</u>